

예 산 총 칙

2025년도 추경 1 회

제 1 조 2025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 (단위:천원)

구 분	세입·세출예산총액	일시차입한도액
합 계	498,372,437	14,951,173
일반회계	498,372,437	14,951,173

제 2 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·세출 예산(안)의 명세는 별첨 '세입·세출예산 사업명세서'와 같다.

제 3 조 2025년도 채무부담행위사업은 '해당없음'으로 한다.

제 4 조 계속비 사업은 '해당없음'으로 한다.

제 5 조 명시이월 사업은 '해당없음'으로 한다.

제 6 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·세출 예산(안)의 일반회계 예비비는 2,526,897천원으로 한다.

제 7 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·세출 예산의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32,0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부서에서 동일부문에 있는 정책사업간의 경비,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.